

2026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 모집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6급 이하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 모집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육 군 참 모 총 장

군무원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기재된 세부내용(응시자 제출서류 내용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개인별 입력자료(성명, 연락처, 자격증·면허증 취득정보 등)를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같은 날짜에 실시하는 2026년 일반군무원 채용 시험에는 **1개 기관, 1개 모집 구분만 응시 가능합니다.**
 - * 기관 :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주관 채용시험에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음.
 - * 구분 :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경력경쟁채용 중 2개 이상 모집 과정에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음.
 - * 중복(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일시를 기준으로 나중에 접수한 원서를 취소합니다.
-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은 **국방통합모집 포털(<https://m-recruit.mnd.go.kr>)**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 * 세부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육군 군무원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붙임 4]**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 동의서'에 부동의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능
 - * 문자 수신 부동의시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없음

1

채용예정인원 [592명]

가. 7급 : 30명

채용직급/인원			응시자격	근무 예정지역
직렬	계급	인원		
행정	7급	10	• [장애인 구분 모집]	전국
군수	7급	10	• [장애인 구분 모집]	전국
전산	7급	5	• [장애인 구분 모집]	전국
사이버	7급	5	• [장애인 구분 모집]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사이버직렬 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전국

※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참고 **[붙임 1]**

※ 직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날('26. 7. 3.)까지 취득(최종 합격)하여야 함.

나. 9급 : 562명

채용직급/인원			응시자격	근무 예정지역
직렬	계급	인원		
행정	9급	238	• [장애인 구분 모집]	전국
군수	9급	227	• [장애인 구분 모집]	전국
전산	9급	56	• [장애인 구분 모집]	전국
사이버	9급	41	• [장애인 구분 모집]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사이버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전국

※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참고 **[붙임 1]**

※ 직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날('26. 7. 3.)까지 취득(최종 합격)하여야 함.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 ('08. 12. 31. 이전 출생자)

나. 2026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6. 9. 16.)을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1조 정년, 제10조 결격사유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필기시험 시행 전날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 점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 등급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라. 채용 직급별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시행 전날까지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채시험 응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 필수 직렬 (10개)

- 사서,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붙임 1]**)

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6. 4. 30.)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사.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 **일반모집(육군 군무원채용공고 제2026-10호, 11호)**직위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장애인 구분모집과 **일반모집(육군 군무원채용공고 제2026-10호, 11호)**간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3

시험 일정

원서접수	편의지원 서류제출 (해당자)	필기시험 계획공고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4. 23. (목) ~ 4. 30. (목) 18:00	5. 11. (월) ~ 5. 22. (금)	6. 18. (목)	7. 4. (토)	8. 10. (월) * 면접계획 / 신원조사 동시안내	8. 26. (수) ~ 9. 16. (수)	9. 30. (수)

- ※ 시험일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 ※ 수정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국방통합모집 포털, 대한민국 육군, 나라일터, 육군 취업 지원센터 등에 게시
- ※ 응시자가 입력한 능력검정시험, 자격증·면허증에 대한 확인 불가자 및 가산점 부여 대상자(가산 자격증·면허증,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는 필기시험 계획공고에 함께 공지
- ※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 ※ 취소 기간 : 5. 1. (금) 00:00 ~ 5. 3. (일) 24:00

4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 방법 : 필기시험(1차), 면접시험(2차)

1) 필기시험(1차)

가) 시험과목 : 7급 4과목, 9급 3과목 **[붙임 2]**

* 영어와 한국사는 응시자가 제출한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나) 문제형식 및 문항 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다)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라)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의 130%

* 단,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선발예정 인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선발예정 인원이 4명에서 20명 이하인 경우는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 내 선발

*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마) 영어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서 과목당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합격자 결정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및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8조 등을 적용합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 가능 지역 : 서울 등 16개 지역

(1) 세부지역 : 서울, 인천, 안양, 고양, 포천, 용인, 이천, 춘천, 원주, 대전, 청주, 광주(광역시), 전주, 대구, 부산, 창원

(2)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지역은 응시자가 선택하되, 해당지역 시험장 임차 제한 등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명시된 필기시험 지역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필기시험 계획공고를 확인 바랍니다.

※ 예) 필기시험 장소를 '인제'로 선택했으나 세부 시험장소(학교) 편성 시 '원주' 지역 시험장소(학교)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지역별 세부 시험장소(학교)는 '26. 6. 18. (목) 국방통합모집 포털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예정입니다. 학교 임차 사정에 따라 응시자의 시험장소가 편성되므로, 공고된 시험장소는 응시자 개인사정에 의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 시험장소 공고 후라도 재난발생 등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면접시험(2차)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신원조사 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가) 평정요소

- | | |
|--------------------------|---------------------|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⑤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 |

나) 합격결정 기준

* 면접 평정요소 5개항에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여 각 면접 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나. 최종 합격자 결정

- 1) 필기시험 점수(75%)와 면접시험 점수(25%)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2)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결정하고,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에는 전공과목 성적순으로 결정하며, 전공과목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3)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임용예정일 : '26. 12. 1. 이후

※ 임용일은 부대사정 또는 군무원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부터 공석 발생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6. 4. 23. (목) 09:00 ~ 4. 30. (목) 18:00

- * 기간 내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 * 'KG이니스' 결제시간을 기준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18:01 이후 응시수수료를 결제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접수 방법

- 1) 인터넷 국방통합모집 포털(<https://m-recruit.mnd.go.kr>) 접속 후 공고(육군 군무원채용 공고 제2026-12호)를 선택하여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 * 상세 접수 방법은 육군 군무원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붙임 4]**
- 2) 응시원서 작성 후 응시수수료 결제를 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가) 원서접수 마감일 4. 30. (목) 19:00 이후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합니다.
 - 나) 응시수수료 결제 시 6·7급 7,000원,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 *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약 1개월 소요)

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응시원서 작성시 면제대상에 체크하고, ④번 해당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다. 원서접수 취소

- 1) 취소 기간 : '26. 5. 1. (금) 00:00 ~ 5. 3. (일) 24:00
- 2) 취소 방법 : 국방통합모집 포털에서 '지원서 취소' 이용

라. 원서접수 수정 입력(능력검정시험, 자격증·면허증)

- 1) 수정 입력 기간 : '26. 7. 4. (토) 09:00 ~ 7. 8. (수) 18:00
- 2) 대상 : 취득정보 확인 불가자, 취득예정자
 - * 확인 불가자는 필기시험 계획 공고 시 공지 예정입니다.
- 3) 항목 :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면허증
- 4) 방법 : 국방통합모집 포털에서 해당 변경 사항을 수정 입력

※ 응시자가 최초 잘못 기재하였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추가 수정하여 해당 기관별 조회가 안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수정입력 대상자가 아닌 대상자가 확인 완료된 항목을 임의 수정하여 확인 불가자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마. 원서접수 작성 시 유의사항

- 1) 직급 변경을 원할 시는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4. 30. (목) 18:00) 이후에는 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 2) 응시자는 원서접수 간 기본사항(연락처 등), 장애인·취업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등록정보, 응시수수료면제 대상 여부,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정보, 가산점·응시필수 자격증·면허증 취득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3) 시험기관 및 발급기관에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자격증·면허증, 취업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4) 합격자(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수험번호만 표기하므로 본인의 응시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5) 원서접수 시 ‘문자 수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채용과정 진행 중에 보내는 알림문자를 받지 못합니다.
- 6) 원서접수 마감일에 서버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접속 장애 등 정상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7) 2개 이상 기관에 중복(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일시를 기준으로 나중에 접수한 원서를 취소합니다.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입력

가.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7급	9급
토익 (TOEIC)	기준점수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	285점 이상	235점 이상
토플 (TOEFL)	기준점수	IBT 54점 이상	IBT 41점 이상
텝스 (TEPS)	기준점수	268점 이상	211점 이상
	청각장애	161점 이상	127점 이상
지텔프 (G-TELP)	기준점수	Level 2 47점 이상	Level 2 32점 이상
플렉스 (FLEX)	기준점수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300점 이상	240점 이상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 2026년부터 TOEFL(IBT) 점수체계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점수체계에 따른 점수도 함께 표기되므로 기존 점수체계를 기준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1) '21.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 2) '21.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 3)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을 통해 사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일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 사전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각 군 포함)·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및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 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다. 시험성적 입력 방법

- 1) 토익 성적은 토익위원회와 연동되어 가져오기로 정보가 등록이 되나, 가져오기가 제한될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성적정보(시험일, 수험번호 등)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 「취득중」은 체크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가 입력한 성적정보 등 오기입으로 인하여 해당시험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안될 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시험종류, 시험일, 점수·등급, 인증번호 등 성적표(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토익을 제외한 나머지 검정시험은 원서접수 시 시험일, 시험종류, 시험점수, 수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영어시험 중 사전등록을 못하였을 경우 여권상의 영문성명이 포함된 증빙서류(성적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정보 : 시험종류, 시험일, 시험점수, 수험번호

* 수험번호는 영어시험 시행기관에 시험 응시할 때 부여받은 것을 말함

* 토익/토플 숫자 6자리, 토플 숫자 16자리, 지텔프 숫자 11자리, 플렉스 숫자 10자리

 <p>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 G-TELP™ G-TELP KOREA</p> <p>Total Score : 214 You have answered of all the question on the test correctly. 72% 점수</p> <p>홍길동 수험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p> <p>DATE: 2016-10-25 시험일</p>	 <p>ETS TOEIC OFFICIAL SCORE CERTIFICATE 한국 TOEIC 위원회</p> <p>HONG GILDONG 수험번호: 000001 Date of test: 2000/01/01</p> <p>시험일: 2008/09/27 Date of test: 2008/09/27</p> <p>LISTENING: Your Score 375 (48%) READING: Your Score 335 (41%)</p> <p>TOTAL SCORE: 710 점수</p>
<p>예) 지텔프 성적표 시험일, 평균점수, 수험번호</p>	<p>예) 토익 성적표 시험일, 점수, 수험번호</p>

3)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또는 원서접수 후 발표된 영어 성적을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수정 입력 기간 내 수정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정 입력 기간 : '26. 7. 4. (토) 09:00 ~ 7. 8. (수) 18:00 / 기간 내 상시 수정 가능

* 국방통합모집 포털 : <마이페이지> → <[모집공고]지원내역> 에서 수정

라. 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대상자 (해당자에 한함)

1) 적용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가)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2) 제출서류 등 안내

대상자	제출서류
(1) 두 귀의 청력손실 80dB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1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1부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고,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 의사 진단서 원본 1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1부

가)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나) 발급기관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다)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① 면제 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②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 진술
* 장애 정도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에 따라 검사
- ③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 ① 보건복지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청력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 ②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으로서
- ③ 군무원 임용시험의 어학 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3) 신청방법

가) 원서접수 시 장애 여부를 체크하고 의사진단서와 영어 성적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나) 신청기간 : '26. 5. 11. (월) ~ 5. 22. (금) * '26. 5. 22. (금) 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

* 서류제출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70호 인사사령부
장교/군무원선발과 군무원채용담당 (우편번호) 32800

* 서류봉투 겉면에 **[붙임 5]** 양식을 출력하여 부착

마. 유의사항

- 1)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여부, 시험성적 등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2) 원서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대상자 중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3) 응시자가 입력한 정보(시험일, 수험번호 등)로 해당시험 시행기관에 조회를 의뢰하니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입력

가. 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7급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4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필기시험 시행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다. 시험성적 입력 방법

- 1)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일(취득일자), 등급, 인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취득중」은 체크란에 체크, 인증번호는 자격/면허 번호란에 입력

입력정보 : 시험일(취득일자), 합격등급(급수), 인증번호(- 제외 숫자 8자리)

2)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한국사 성적을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수정 입력 기간 내 수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정 입력 기간 : '26. 7. 4. (토) 09:00 ~ 7. 8. (수) 18:00 / 기간 내 상시 수정 가능

* 국방통합모집 포털 : <마이페이지> → <[모집공고]지원내역> 에서 수정

라. 유의사항

-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여부, 시험성적 등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2) 원서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3) 응시자가 입력한 정보(시험일(취득일자), 등급 등)로 해당시험 시행기관에 조회를 의뢰 하니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적용대상 및 서류제출 안내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의사상자 등 증빙서류

가) 응시자가 '의상자'일 경우 : 의사상자 증명서 1부

나) 응시자가 '의사자 유족·의상자 가족'일 경우 : 의사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나. 가점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 점수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면접 점수 만점의 5% 또는 3%	

*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다. 적용범위

- 1) 취업지원 대상자 : 6급 이하 채용 직위 중 채용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직위
- 2)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6급 이하 채용 직위 중 채용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직위

라. 선발범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 1) 가산 자격증 해당 직렬 : 행정, 군수, 전산 직렬
- 2)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0개) 응시자에게는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사서,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3) 가산점 비율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 가산 자격증·면허증 참고 **[붙임 1]**

바. 가산점 적용대상자 입력 방법

1)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정보란에 해당 종류를 선택한 후 가점비율(10%, 5%, 3%)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보훈번호(또는 증서번호), 유공자와의 관계, 발급 보훈지청 등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에 모두 해당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또는 원서접수 후 취득(등록)된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을 등록할 경우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나) 수정 제출 기간 : '26. 7. 4. (토) ~ 7. 8. (수) * '26. 7. 8. (수) 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

* 서류제출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70호

인사사령부 장교/군무원선발과 군무원채용담당 (우편번호) 32800

* 서류봉투 겉면에 **[붙임 5]** 양식을 출력하여 부착

* 제출한 내용이 해당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되어 가산점 부여

2) 자격증 필수 직렬 응시자 또는 자격증 가점 대상자 : 자격/면허/한국사 정보란의 '마이데이터가져오기'를 통해 자격증을 입력하거나 추가를 선택하여 해당 자격증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가산되는 자격증·면허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또는 원서접수 후 취득(등록)된 자격증·면허증을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수정 입력 기간 내 수정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수정 입력 기간 : '26. 7. 4. (토) 09:00 ~ 7. 8. (수) 18:00 / 기간 내 상시 수정 가능

다) 국방통합모집 포털 : <마이페이지> → <[모집공고]지원내역> 에서 수정

* 입력한 내용이 해당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되어 가산점 부여

사.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1) 필기시험 시행 전날까지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에 해당하거나 가산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공채시험 가산 자격증·면허증의 가산점은 각각 적용

2)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번호, 취득일 등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가. 편의지원 신청 대상자

- 1)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 다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단,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주관 시험 내 다른 직위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니더라도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임신부 및 기타 일시적 질병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도 편의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하면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편의지원 제공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본인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편의지원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 * 편의지원 신청자의 시험장 편성 및 시험물품 준비를 위해 사전 접수 필요
- 2) 신청 기간 / 방법 : '26. 5. 11. (월) ~ 5. 22. (금) / 등기우편 제출
 - * '26. 5. 22. (금) 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

- * 서류제출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70호
인사사령부 장교/군무원선발과 군무원채용담당 (우편번호) 32800
- * 서류봉투 겉면에 **[붙임 5]** 양식을 출력하여 부착

- * 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기준 및 절차, 제출 서류는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를 확인 바랍니다. **[붙임 3]**

가.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은 국방통합모집 포털에서 실시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다만, 수정사항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 연락처, 개명자 등의 수정서류 및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 등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연락처 변경 시 국방통합모집 포털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명(改名)자 조치사항 : 개명(改名) 이전에 한국사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취득,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등록·결정,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성명 정정을 신청'하고, 육군 인사사령부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 '26. 7. 4. (토) ~ 7. 8. (수) * '26. 7. 8. (수) 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

* 제출한 내용이 해당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성명 확인 불가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됨.

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전역(퇴직)한 사람은 「군인 명예전역 수당 지급규정」 또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전역(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바. 필기시험은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단,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일이 '26. 7. 4. 인 경우 '26. 5. 31. 현재가 기준이 됨

가. 추가 면접

6급 이하 공채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추가 합격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가. 제출 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게 접수함)

구 분	유 의 사 항 (제출 및 발급 요령)
① 신원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항목 빠짐없이 작성 ※ 서명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화면비율을 100%로 조정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별 내용 확인, 동의 체크 후 서명 클릭
③ 자기소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 후 서명
④ 신용정보조회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 등을 통해 발급 받아 스캔 후 반드시 파일(JPG)로 첨부 ※ 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페이지 전체를 업로드 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상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⑤ 기본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받아 스캔 후 반드시 파일(JPG)로 첨부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상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열람용은 인정 불가

구 분	유 의 사 항 (제출 및 발급 요령)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받아 스캔 후 반드시 파일(JPG)로 첨부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상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열람용은 인정 불가 															
⑦ 병역관계서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5%;">대상자</th> <th style="width: 40%;">발급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병적기록표</td> <td>현역(병/간부) 출신 예비역·퇴역(남·여)</td> <td>병무청누리집(https://www.mma.go.kr)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td> </tr> <tr> <td>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td> <td>현재 복무중인 군인 및 재직중인 군무원(남·여)</td> <td>.</td> </tr> <tr> <td>병적증명서</td> <td>군 미필(면제)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 소집해제 사유 기재)</td> <td>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td> </tr> <tr> <td>미제출 대상자</td> <td>위 제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 또는 만 18세 이하인자</td> <td>'해당없음' 클릭</td> </tr> </tbody> </table> <p>※ 신분별로 해당되는 서류 모두 제출(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p>	구분	대상자	발급방법	병적기록표	현역(병/간부) 출신 예비역·퇴역(남·여)	병무청누리집(https://www.mma.go.kr)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현재 복무중인 군인 및 재직중인 군무원(남·여)	.	병적증명서	군 미필(면제)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 소집해제 사유 기재)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미제출 대상자	위 제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 또는 만 18세 이하인자	'해당없음' 클릭
구분	대상자	발급방법														
병적기록표	현역(병/간부) 출신 예비역·퇴역(남·여)	병무청누리집(https://www.mma.go.kr)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현재 복무중인 군인 및 재직중인 군무원(남·여)	.														
병적증명서	군 미필(면제)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 소집해제 사유 기재)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미제출 대상자	위 제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 또는 만 18세 이하인자	'해당없음' 클릭														

나. 신원조사 서류 제출 대상자 및 방법

- 1) 대 상 자 : 2026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2) 제출기간 : '26. 8. 10. (월) ~ 13. (목) 18:00 까지
- 3) 제출방법 :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psi.dcc.mil.kr>) 접속하여 제출

다. 신원조사 서류 제출의 세부사항은 차후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업 무 분 야	연 락 처
시험 진행 및 직위 관련 문의	042)550-7149, 7146, 7107, 7106, 7102
인터넷 응시지원서 작성간 전산 장애 등	042)550-7472
현역 및 군무원 전역·면직 관련 문의	042)550-7347, 7379
최종 합격자 임용 및 부대분류 문의	042)550-7276, 7308
호봉 획정 관련 문의	042)550-7374, 7373, 7349

※ 전화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00~16:00 (단, 11:45~13:00 제외)

- 붙임 1.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2.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과목
 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4. 육군 군무원 원서접수 매뉴얼
 5. 부대 주소 양식(서류제출시 서류봉투 겉면 부착)